

모집 인원 및 지원 자격

① 모집 인원

단과대학	학과	전형 유형	모집 인원	비 고
약학대학	약학과	일반전형	40명	
		강원지역인재전형	10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강원도 소재의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(예정)자 강원도 소재의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강원도 소재의 고교에서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재학한 자
		농어촌학생전형	3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어촌학생 전형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
	계	53명		

② 지원 자격

전형 유형	지 원 자 격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전형, 강원지역인재전형,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는 ①,②,③,④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
	<p>① 전적 대학의 출신학과(계열 및 전공)에 관계없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p>가.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(예정)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총 65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(전적대학 수료 학점 기준에 의함)</p> <p>나.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※ 3년제 전문대학 2년 수료자 지원 불가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※ 학사학위과정 간호와 지정 전문대학 지정시점 입학자부터 2년 이상 수료(예정)자 가능</p> <p>다.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동법에 의한 학사 학위 과정의 경우에는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(단,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120학점 이상)</p> <p>② 2018학년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(PEET)의 모든 영역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</p> <p>③ 전적 대학, 시간제 등록, 학점은행제, 독학사, 사이버대학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</p> <p>가. 수학: 3학점 이상</p> <p>나. 일반물리학, 일반생물학, 일반화학, 유기화학 중 1개 과목: 3학점 이상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※ 2017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수강 과목은 선수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.</p> <p>④ 2016. 3. 1. 이후에 공인영어시험[TOEIC, TEPS, TOEFL(iBT) 중 하나] 성적을 취득하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는 자</p>
강원지역 인재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통사항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⑤, ⑥, ⑦을 모두 충족하는 자
	<p>⑤ 전적 대학의 출신 학과(계열 및 전공)에 관계없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p>가. 강원도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입학하여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(예정)한 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※ 타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여 강원지역 대학으로 편입한 자는 강원지역인재 지원 불가</p> <p>나. 강원도 소재의 전문대학을 졸업(예정)한 자</p> <p>다. 강원도 소재의 고교에서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재학한 자</p> <p>⑥ 2018학년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(PEET)에서 2개 영역(과목) 이상 백분위 점수가 상위 50% 이상인 자</p> <p>⑦ 전적 대학 평균 성적 백분위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</p>

● 공통사항의 지원 자격 및 2018학년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(PEET)에서 2개 영역(과목) 이상 백분위 점수가 상위 50% 이상인 자로서 다음 ⑧ 또는 ⑨를 충족하는 자

⑧ 전적 대학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

⑨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·면(태백시 포함) 소재 학교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·벽지 소재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<유형 I> 또는 <유형 II>에 해당되는 자

▶ <유형 I> 학생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

▶ <유형 II>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

* 부모의 사망,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거주 요건 등을 심사

농어촌
학생전형

사 유	부모에 해당하는 자
○ 부모의 사망·실종	○ 법률상 사망일(실종일)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
○ 부모의 이혼·재혼	○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○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(자녀교육권)을 가진 자
○ 입양자	○ 입양일 이후부터 친권이 있는 양부모 ○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(자녀교육권)을 가진 자

* 읍·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, 외국어고, 예술고, 국제고, 마이스터고, 체육고, 자율형 사립고는 제외